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2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4월 28일 영등포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5회(임사회) 제1차 위원회(2003년 5월 1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매각료 등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무기한 연체료 부과로 인하여 구민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장기 채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을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분할납부(목적에 따라 5~10년), 변상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5%를 연 4%로, 연 8%를 6%로, 연체 이자율을 기간(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최대 60개월(5년)로 제한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 조례 규정중 근거법령 개폐 및 인용규정의 신설 및 삭제에 따른 변경으로 법령의 정확을 기하고,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 적용범위를 비영리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다. 참고사항

- 근 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홍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변상금 및 연체이자율 등이 인하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제한하는 등 구민을 위한 개정이 있었고, 조례 규정중 근거법령 개폐 및 인용규정의 신설, 삭제 등에 따른 변경으로 법령의 용어를 바로잡고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근거법령의 개폐나 인용규정의 신설, 삭제,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비와 구민의 부담을 줄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
----------	----

제출년월일 : 2003. 4.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구유재산을 이용하는 구민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매각료 등의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적용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 무기한 연체료 부과로 인하여 구민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장기 채납으로 행정력이 낭비됨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분할납부(목적에 따라 5~10년), 변상금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연 5%를 연 4%로, 연 8%를 6%로, 연체 이자율을 기간(1개월 미만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최대 60개월(5년)로 제한하여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며,
- 조례 규정중 근거법령 개폐 및 인용규정의 신설 및 삭제에 따른 변경으로 법령의 정확을 기하고, 대부료 등의 특례규정 적용범위를 비영리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3. 참고사항

- 가. 근 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
- 나. 합의사항 : 없음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입법예고(2003. 3. 5. ~ 3. 14.)결과 : 없음

첨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의 현금”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제75조제1호”를 “제68조제1호”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를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0조의3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8조제5항제1호중 “광역시 지역”은 “광역시의 동 지역”으로 하고, “시 지역”은 “시의 동 지역”으로 하며, “기타 지역”은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제1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안)
<p>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생략)</p> <p>②재산관리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u>영 제84조의2</u>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5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7. (생략)</p>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p> <p>..... <u>연 4퍼센트</u></p> <p>1.~7. (현행과 같음)</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8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4. (생략)</p>	<p>②.....</p> <p>..... <u>연 6퍼센트</u></p> <p>1.~4. (현행과 같음)</p>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u>연 8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7. (생략)</p>	<p>③.....</p> <p>..... <u>연 6퍼센트</u></p> <p>1.~7. (현행과 같음)</p>
<p>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p> <p>①기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을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서신설></p>	<p>제22조의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p> <p>①.....</p> <p>..... <u>다만, 영리 목적</u></p>

현행	개정 (안)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생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세입세출예산의 현금</u>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p> <p>⑤~⑥ (생략)</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u>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u>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p> <p>②~③ (생략)</p> <p>제30조의3(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u>으로 한다.</p>	<p>(<u>농경지 제외</u>)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u>세입세출의 현금</u> <u>제68조제1호</u></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27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p> <p>①..... <u>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부채외한다)</u>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 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0조의3(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5</p>